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75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가. 하남시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간담회 시 관내 각급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 하수도 요금 감면을 제도개선 협의 안건으로 건의하여 경기도 지자체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도입 반영
-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권고 방안에 따른 현행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상 고정비율 방식에서 일할 산정 방식을 도입 ·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감면 등) 규정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수도사용 요금에 대해 누진 율 적용 없이 1단계 요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례에 신설 · 반영(안 제25조)
-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및 독촉에 대하여 고정비율 산정방식에서 일할산정 개선방식을 반영하여 하수도 요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업무처리 하고자 함(안 제27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8년 09월 10일 ~ 10월 3일 (23일간)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상하수도과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사용요금은 누진을 적용 없이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7.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사용요금은 누진을 적용 없이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아니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체금 = 미납금요금×3/100×12개월×연체 일수/365(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3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서명		하수도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하수도과장 이광섭
	팀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황진섭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황진섭 (790-544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감면 등) ① (생략)</p> <p>1. ~ 5.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25조(감면 등) ①(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사용요금은 누진을 적용 없이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p> <p>7.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사용요금은 누진을 적용 없이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u>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 부과기준은 「지방세징수법」 제30조를 준용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27조 (연체금 및 독촉) ① ----- ----- ----- <u>아니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부과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체금 = 미납금요금×3/100×12개월×연체 일수/365(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3로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서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